

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번호	제 178 호
의결년월일	2004. 12. . (제 12 회)

제출일자	2004. 11. .
제출자	계 룡 시 장

1. 제정 이유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에서는
 -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 -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,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 -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 -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함(안 제3조).
-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
- 예산조치사항
 -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 : 1,400천원 (70,000원×20명)

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
1.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시장)
 2.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
 3.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
 4.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
 5.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교육장
 6.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
 7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)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 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위원의 활용) 새로운 정책의 개발·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 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

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,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회의결과의 통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운영규정)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

회의일시	년 월 일 () : ~ :		
회의장소			
안 건			
출석위원		관 계 인	
발언위원	내 용		비 고
회의결과			

(별지 제2호 서식)

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 부의안건

의안번호 제 호

안 건			
제 출 일		제 출 자	
제안이유			
주요골자			
법적근거			

관 련 법 령(발 취)

□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에 부여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